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692
----------	-------

발의연월일 : 2017. 12. 7.

발의자 : 박정 · 박찬대 · 박재호

김철민 · 김민기 · 김해영

박완주 · 박영선 · 이찬열

전해철 · 인재근 · 김병기

신동근 · 소병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고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사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나 로고, 인테리어 등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보호시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외에 저작권도 보호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정부가 가맹사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8조).

법률 제 호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재산권”을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 제3호 · 제4호 및 제5호 중 “산업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u>산업재산권</u>의 보호) ① 정부는 가맹사업의 <u>산업재산권</u>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가맹사업의 <u>산업재산권</u>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생 략) 3. 가맹사업의 <u>산업재산권</u> 보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가맹사업의 <u>산업재산권</u>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u>산업재산권</u>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18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p>	<p>제12조(<u>지식재산권</u>의 보호) ① ----- -----<u>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u> <u>등 지식재산권</u>----- -----.</p> <p>② -----<u>지식재산권</u>-----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식재산권</u>----- ----- -----</p> <p>4. -----<u>지식재산권</u>----- -----</p> <p>5. -----<u>지식재산권</u>----- ----- -----</p> <p>제18조(업무의 위탁) ① ----- ----- ----- ----- -----</p>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u>산업재산권</u> 보호에 관한 업무	3. ----- <u>지식재산권</u> -----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